



박종철 / 정회원, (주)인터스페이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by Park, Jong-chul, KIRA

약력

-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현 건축개혁실천을 위한 양심소리(건양) 대변인
- 현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위원회, 건축사법개정T/F팀 위원

옥불탁(玉不琢)이면 불성기(不成器)요

You cannot make an omelette without breaking eggs.

건축기본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축의 기본정신이 되는 법령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시작된 법제정 움직임이 3년여 만에 '건축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현행 법령이 우리나라에 40여개가 있지만 건축계에는 처음 있는 일이다. 사실 다른 대부분 기본법들이 지난 10년을 전후해서 제정 또는 기존 법령이 법령개정 되어온걸 감안해보더라도 건축기본법 제정은 상대적으로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건설이 우선되어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기여를 해 왔다면, 앞으로는 건축이 건축 그자체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국가가 인지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 하겠다는 의지를 건축기본법에 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건축의 진정한 가치를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는 듯이 보여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건축기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건축물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이며, 나아가 장차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최근 건축물의 미적 요소 및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주변공간의 조화, 도시경관의 고려를 공익으로 규정하고 환경과 문화에 있어 건축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건축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건축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

건축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국민 공동의 노력으로 건축의 생활공간적·사회적·문화적 공공성의 창조 및 조성이라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여 보다 정성적(qualitative)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기존 건축법과는 달리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어,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까지도 그 태생단계에서부터 소멸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에 ‘옥불탁(玉不琢)이면 불성기(不成器)요, 인불학(人不學)이면 부지도(不知道)’ 라는 말이 있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또 우리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어렵게 건축기본법이라는 옥을 구하고 구슬을 마련했다.

앞으로 그것을 그릇으로, 보배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로지 건축계의 의지와 태도변화에 달려있다.

이제 시작이다. 건축기본법 제정이 국가건축정책의 기본이 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건축인들의 근본적인 사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일부를 진행·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실상 건축에 관한 최상위 개념의 법령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에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입법되어지는 확률에서 보듯이 한 개의 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매우 낮다. 특히 정부 관계부처간의 이해관계와 타 법률 간의 상충 가능성, 그리고 특정집단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법률의 경우는 더더욱 그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동안 건축기본법 제정을 위해 다른 정부 부처 소관의 관련법안 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부처담당자들과 조율하고, 또 그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의 배경에는 그동안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입법발의에 발 벗고 나선 강길부 국회의원과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김진애 위원장의 노력, 그리고 순탄하지만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건축기본법 연구를 끝까지 해온 서울대 김광현 교수의 학자로서의 열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건축정책을 관장하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축문화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건축사법’에서 정한 유일한 건축사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의 한명수 회장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에 ‘옥불탁(玉不琢)이면 불성기(不成器)요, 인불학(人不學)이면 부지도(不知道)’ 라는 말이 있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또 우리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어렵게 건축기본법이라는 옥을 구하고 구슬을 마련했다. 앞으로 그것을 그릇으로, 보배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로지 건축계의 의지와 태도변화에 달려있다. 이제 시작이다. 건축기본법 제정이 국가건축정책의 기본이 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건축인들의 근본적인 사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소위 건축전문가들의 집단임을 자칭하는 다른 단체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그저 좌시하지만 말고, 건축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으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함께 힘을 모아도 어려운 시기에 언제까지 몇몇 개인의 가공된 자존심만을 내세울 것이며, 언제까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희생은 마다하면서 그럴듯한 명분만을 앞세워 입에 발린 말만 하고 있을 것인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현실화 시키는 행동이다. 이제 행동으로, 결과로 그 말을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건축기본법! 죽 썰어 개 주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 ▣